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984호 2017. 9. 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32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9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5
- 삼척시 고시 제10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0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83호 삼척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3
- 삼척시 공고 제689호 2016회계연도 삼척시 지방재정공시(결산) ----- 24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2017년 제8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7. 08. 16.)에서 의결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김양호

2017년 9월 1일

삼척시 규칙 제532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의”를 “읍면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에”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

<별 지>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15조 관련)

| 기관별 | 직위 | 직급 |
|-----------|------|---|
| 도계읍행정복지센터 | 도계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원덕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근덕면행정복지센터 | 근덕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 하장면행정복지센터 | 하장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
| 노곡면행정복지센터 | 노곡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미로면행정복지센터 | 미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가곡면행정복지센터 | 가곡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신기면행정복지센터 | 신기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남양동행정복지센터 | 남양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성내동행정복지센터 | 성내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교동행정복지센터 | 교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 정라동행정복지센터 | 정라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별표 2]

부읍·면장의 직급 (제16조 관련)

| 기관별 | 직위 | 직급 |
|-----------|---------|------------------|
| 도계읍행정복지센터 | 도계읍 부읍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원덕읍 부읍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근덕면행정복지센터 | 근덕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하장면행정복지센터 | 하장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노곡면행정복지센터 | 노곡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미로면행정복지센터 | 미로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가곡면행정복지센터 | 가곡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 신기면행정복지센터 | 신기면 부면장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삼척시 고시 제 2017 - 99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30일

삼척시장

1.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 일련 번호 | 지구명 | 위치 | 지정개요 | | | 지정사유 | 비 고 |
|----------|---------|-----------------------------------|-------------|------|----|----------------------|------|
| | | | 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 |
| 1 | 도계4리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3번지 일원 | 2,140 | 붕괴위험 | D | 급경사지 사면으로 낙석발생 위험 | 신규지정 |
| 2 | 신남지구 |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산86-2 일원 | 3,748 | 붕괴위험 | D | 급경사지 사면으로 낙석발생 위험 | 신규지정 |
| 3 | 도계(3-1)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8-15. 316-2번지 | 1,000 | 붕괴위험 | D |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 | 신규지정 |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삼척시

3.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17. 08. 30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시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 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 나.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삼척시청 안전총괄과 (☎033-570-3887)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 현황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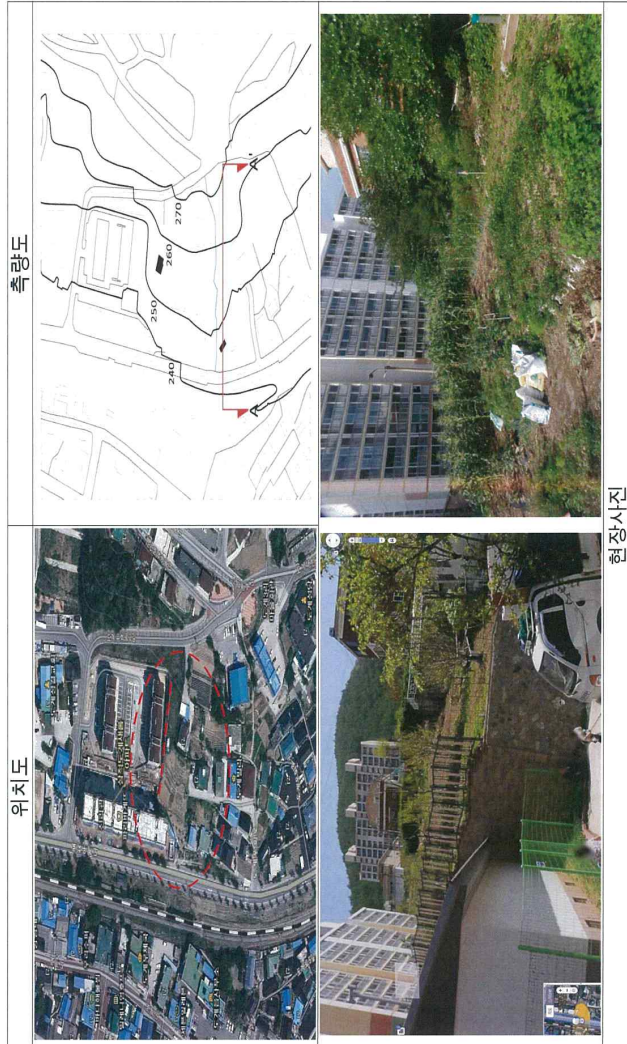
○ 지정고시 : 도계4



○ 지정고시 : 신남지구



○ 지정고시 : 도계(3-1)



삼척시 고시 제2017 - 10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0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617 외3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고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고 |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 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67-4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617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807 | 지역적 특성 반영 | |
| 2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리 18-1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원동로 12-39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904 | 행정구역명칭 반영(역둔리+원동) | |
| 3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12-8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안길 408-67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위치활용 | |
| 4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12-9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안길 408-76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위치활용 | |
| 5 | | 이 | 하 | 여 | 백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구분 | 순번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 고시일 | 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 | 계 | 4건 | 계 | 4건 | | | | | |
| 부여 | 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67-4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617 | 20170901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8-07 | 지역적 특성 반영 | | |
| 부여 | 2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리 18-1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원동로 12-39 | 20170901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9-04 | 행정구역명칭 반영(역둔리+원동) | | |
| 부여 | 3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12-8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안길 408-67 | 20170901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위치활용 | | |
| 부여 | 4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12-9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안길 408-76 | 20170901 | 201709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위치활용 | | |

삼척시 공고 제2017-683호

삼척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 개정 규칙 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삼척시장

삼척시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괄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 7. 1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례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15.7.1.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정비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수급자를 인용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급여 중 일부를 선택하여 대상범위의 명확화 추진

3. 입법예고기간 : 2017. 8. 28. ~ 9. 1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 033-570-3733
 - FAX : 033-570-313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1부.
 2.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의 지급방식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정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용어를 인용하는 삼척시 조례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

※ 「삼척시 수급자 용어 인용 법령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제2조 관련

| 연번 | 부서별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안 |
|----|------------|---|---|--|--|
| 1 | 회계과 (2)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28조제3항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 | | | 제38조제1항제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3 | | | 제63조제4항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4 | | 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5 | |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제4조 관련) | | 별표1과 같다 |
| 6 | | | [별지서식] 공공 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 별표2와 같다 |

| 연번 | 부서별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안 |
|----|---------------------------|--------------------------------|----------------------|--|---|
| 7 | 주민생활 지원과 (5) | 삼척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3조제6호,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8 | | | 제3조제7호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9 | | | 제3조제8호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10 |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상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
| 11 | | | 제2조제1호 | 법이 정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
| 12 | |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5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 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 층 |
| 13 | | | 제21조제2호다목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기 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14 |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2조제2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 급자 |
| 15 | | | 제2조제2항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 급자 |
| 16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제1항제1호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 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 층. | |

| 연번 | 부서별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안 | |
|----|--------------|------------------------------------|------------|--|---|---|
| 17 | 사회복지과 (5) |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 제14조제3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따른 수급 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 18 | |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2조제2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 19 | |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6조제1항제2호 | 기초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 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 층 | |
| 20 | | 삼척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6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장애인수 급자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장애인수급 자를 | |
| 21 | | 삼척시 영유아 보육조례 | 제24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 22 | | | | | 제24조제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연번 | 부서별 | 자치법규명 | 정비대상 | 현행 | 개정사항 |
|----|-------------|--------------------------------------|--------------------|---|---|
| 23 | 민원봉사과 (1) |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7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4 | 환경보호과 (2) |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제13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5 | | 삼척시 분노 및 가혹분노 처리에 관한 조례 | 제7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6 | 지역경제과 (1) |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7 | 건축과 (1) |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5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8 | 농업기술센터 (1) |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11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9 | 상하수도사업소 (2) |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 제14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30 | | | 제42조제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31 | | 삼척시 하수도 사용조례 | 제23조(감면 등)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별표1]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제4조 관련)

| 순위 | 만 20세 이상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
| 1 |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 2 | 장애등급 3~6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 | 미과세대상자 | 미과세대상자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 3 |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으로서 미과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미과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 |

가.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유형 5가지 유형(만 20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생략) |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

삼척시공고 제2017-689호

2016회계연도 삼척시 지방재정공시(결산)

우리 삼척시에서는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진과 시민들의 재정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상황(결산기준)**을 **2017. 9. 1일 부터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 ▶ 공시근거 : 지방재정법 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 기준년도 : 2016회계연도 지방재정 결산기준
- ▶ 공시시기 : 2017. 9. 1일부터
- ▶ 공시방법 : 삼척시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열린시정 ➡ 예산정보 ➡ 재정공시
- ▶ 공시내용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아래 사항
 - ▶ 공통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주요예산 집행 결과, 지방세/세외수입, 복지/민간지원, 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 재정성과/평가, 주요투자사업 현황
 - ▶ 특수공시 : 주민숙원사업중 16년도 추진한 주요사업 10건
- ▶ 문의처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033-570-3212)